

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종료 등 행정처분 결정통지 공시송달 공고

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종료 등 행정처분 결정 통지를 등기송달 하였으나, 폐문부재의 사유로 2차에 거쳐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.

2024. 7. 23.

광주지방고용노동청 익산지청장



1. 건 명 :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종료 등 행정처분 결정통지
2. 근 거 :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20조,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성 명	생년월일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내용		송달불능 사유	주소
			처분사유	처분하고자 하는 내용		
하정○	1997.1.14	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종료 등 행정처분 결정 통지	2023.4.28. 국민취업지원제 수급자격을 신청하여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던 중 2024.3.15.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여 2024.3.22. 인정받은 사실	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4.3.22. 취업지원을 종료하고, 종료한 날로부터 3년간(2024.3.23.~2027.3.22.) 취업지원 참여 제한	폐문부재	전북 익산시 선화로33길 (이하생략)

4. 공고기간 : 2024. 7. 23.~ 2024. 8. 5.(14일간)

5. 기타사항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익산지청 익산고용센터 김현미(063-840-6557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